

수 도 권 광 역 급 행 철 도 C 노 선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0. 04.



국 토 교 통 부

목 차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1.1 계획의 목적	1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1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1
1.4 계획의 개요	2
1.5 기대효과	3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5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5
2.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8
2.3 대안의 설정	11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14
3.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14
3.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 수렴	14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16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16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별 심의의견	17

제1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목적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은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만성적인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주요 거점역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중심부로의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장거리 통행수요 대처 및 이동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본 계획의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기본계획은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사. 철도의 건설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2011.04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반영
- 2016.01 ~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 2016.06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반영
- 2018.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B/C 1.36, AHP 0.616)
- 2019.06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2020.01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0.04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운영

나. 향후계획

- 2020.04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 2020.05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0.05~ : 주민의견수렴(주민설명회, 공청회(주민요청시))
- 2020.0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1.4 계획의 개요

가. 계획내용

- 규모 : (공용연장) 전체 74.2km중 공용 37.8km (신설 36.4km)
 (정 거 장) 신설 6개소(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기존 4개소(덕정, 의정부, 금정, 수원)
 (차량기지) 1개소
-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나. 개발계획 규모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은 전체연장이 74.2km이며, 정거장 10개소(신설 6개소, 기존역 활용 4개소), 차량기지 1개소로 계획됨

<표 1-2>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노선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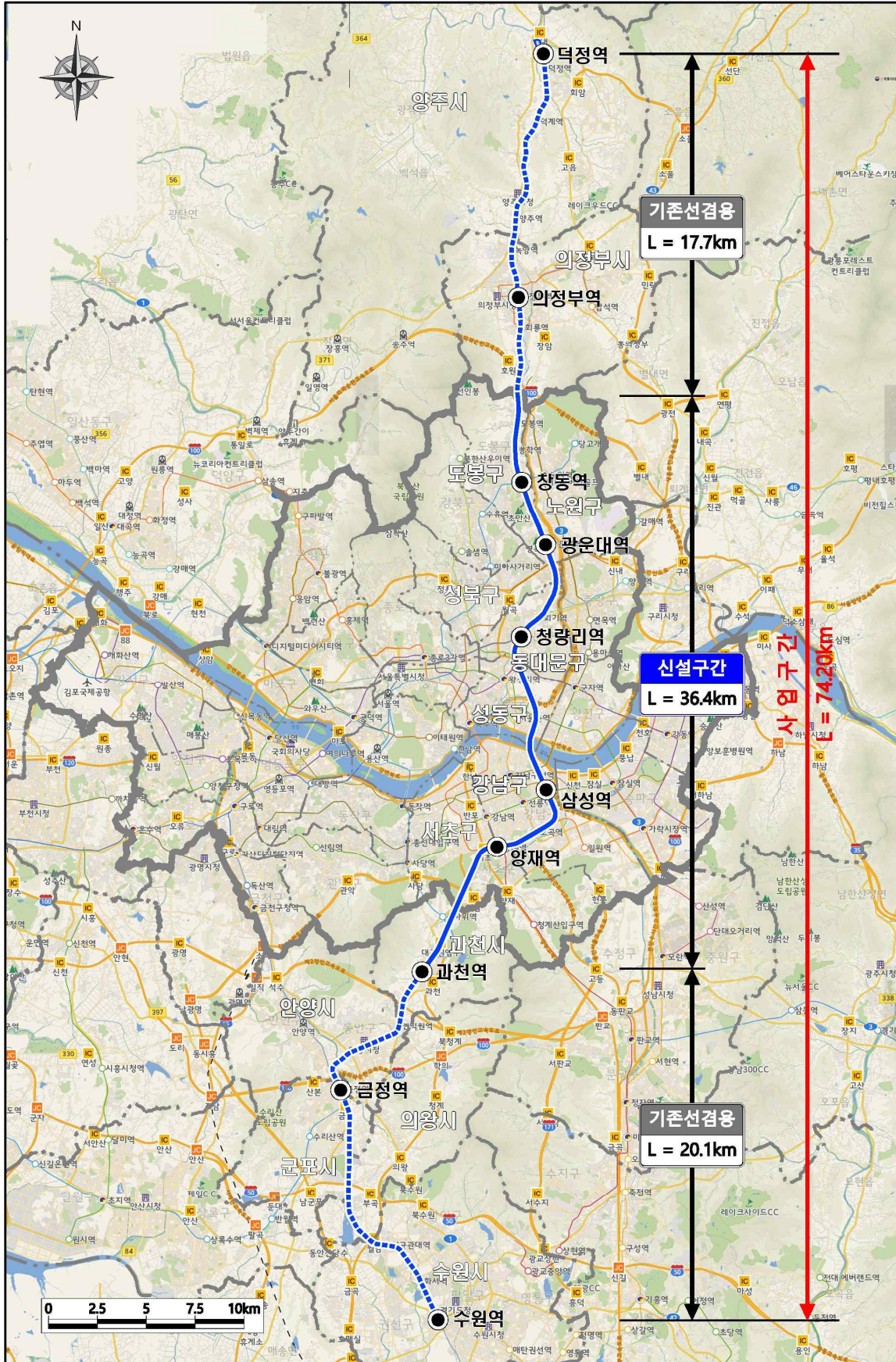
노 선 개 요	
노선연장	74.2km
정거장	10개소 : 덕정,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
차량기지	1개소 : 양주(176,000㎡), 경수선·중수선 공장, 유치선, 검사선, 시험선 등

다. 개발계획 범위

- 공간적 범위 : 덕정~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수원
 - 행정구역 :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일원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일원
 - 시·종점 : 경기도 양주시 ~ 경기도 수원시 일원
- 시간적 범위 : 2018년 ~ 2058년

1.5 기대효과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철도수송 분담율 제고로 교통난 해소 및 경제 활성화와 철도경쟁력을 향상시켜 친환경 녹색성장의 핵심 교통수단인 철도의 위상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삼성역을 중심으로 GTX-A, 위례~신사, 기존 지하철(2호선)과의 복합환승 시설 및 과업 구간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향후 발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철도서비스 향상을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향상 및 지속발전이 가능한 철도망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그림 1-1) 계획노선 위치도(예타안)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고 대상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상계획지와 환경영향 등이 미칠 권역을 설정하되, 계획특성과 대상지역 입지여건(환경공간현황) 및 평가항목별 영향요인 등을 고려하여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로 구분함

<표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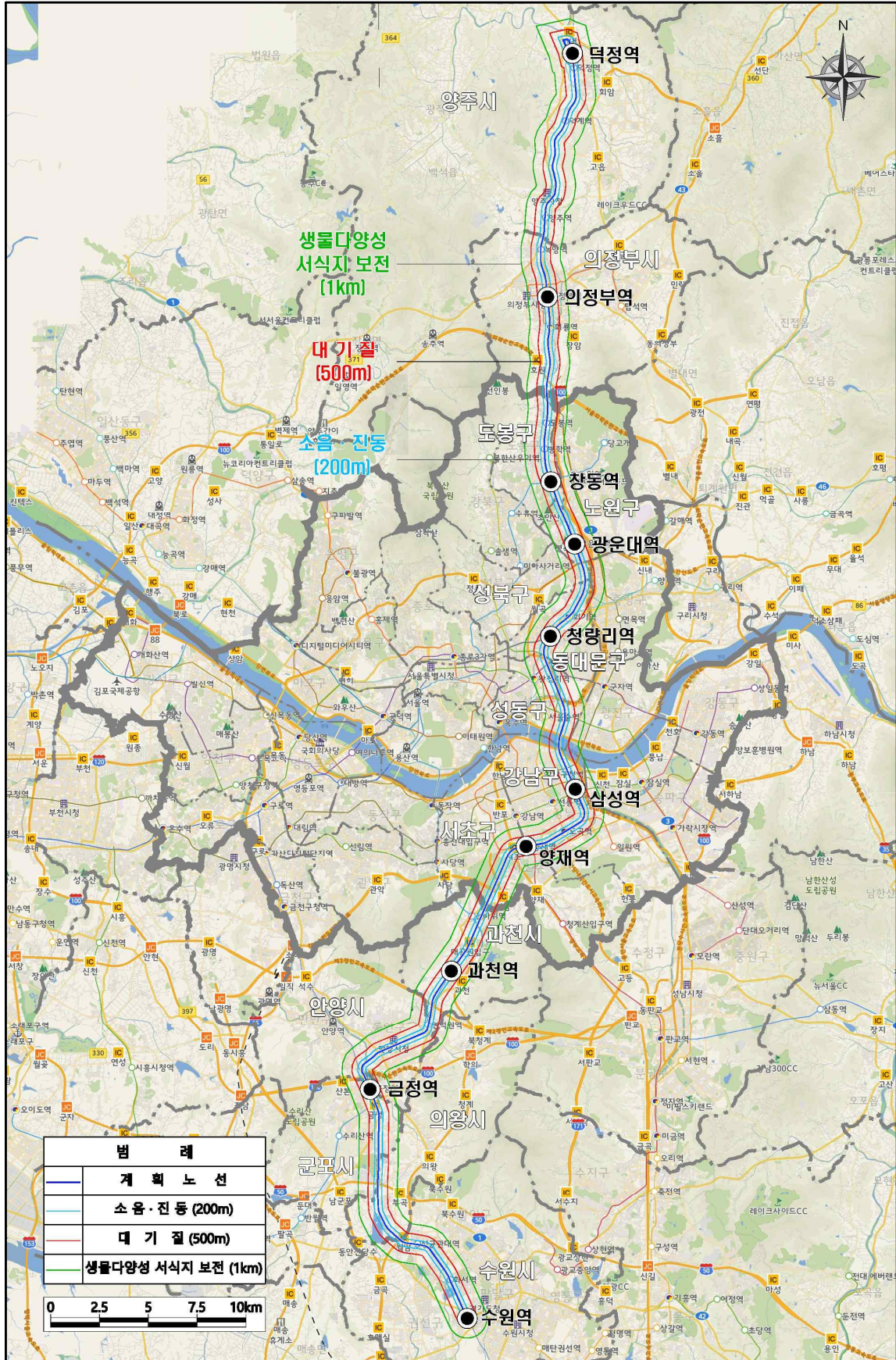
구 분	평가대상 범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	계획단계, 공사단계, 운영단계

<표 2-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분	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계획의 적정성	-	-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경기도, 서울시 및 계획노선	계획단계	○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경기도, 서울시 및 계획노선	계획단계	○ 개발기본계획 미수립을 포함한 계획수립 전·후에 대한 비교를 통하여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	-	-
자연 환경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반경 1km이내)	공사단계 운영단계	○ 식생훼손, 식생보전등급, 현존량, 순생산량의 변화 및 동물 서식환경 변화요인 및 대책 ○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훼손 및 영향 여부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 터널공사 등 토공사에 의한 지형변화, 터널 안정성, 생태축 단절 등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운영단계	○ 계획노선 주변 경관자원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수환경의 보전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 공사시 토사유출, 오·폐수발생, 운영시 오수, 비점오염물질 발생으로 주변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표 2-2> 계속

구분		항목	평가대상지역		선정기준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입지의 타당성			-	-	-
생활 환경의 안전성	환경 기준 부합성	기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	○최근10년간 기상관측자료 분석
		대기질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반경 500m이내)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장비가동, 운영시 터널환기 등에 의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온실가스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토양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소음·진동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반경 200m이내)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장비가동 및 발파, 운영시 열차 운행 등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적정성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주변 개발여건, 교통망 등과 연계된 노선, 정류장, 차량기지 계획 검토	
	인구 및 주거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단계 운영단계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변화 검토	



(그림 2-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2.2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의 설정

- 평가항목의 설정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환경영향평가 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나. 개발기본계획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계획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음

<표 2-3> 평가항목 설정 및 선정사유

구 분	평가항목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비교, 입지비교 등 대안 비교를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입지의 타당성	○ 자연환경의 보전	○ 자연환경의 변화 검토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식물상, 식생, 동물상의 변화 검토	
	-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 및 생태축 변화 검토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검토	
	-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토사유출, 비점오염물질 발생	
	○ 생활환경의 안정성	○ 생활환경의 변화 검토	
	- 환경기준의 부합성	기상	○ 대기질 영향예측시 기초자료 활용
		대기질	○ 공사시 장비가동, 운영시 터널환기 등에 의한 대기 오염물질 발생
		온실가스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토양	○ 공사시 지장물 철거, 폐유발생 등 토양오염 우려
		소음·진동	○ 공사시 장비가동, 터널굴착, 운영시 차량운행 등 소음·진동 발생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기초 현황자료 활용을 위한 현황 파악 - 환경기초시설의 공급·처리와 직접 관계는 없음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사회·경제환경의 변화 검토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편입용지 발생 및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 인구 및 주거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변화 검토		

나. 평가범위 및 항목의 설정

- 본 개발기본계획으로 인한 환경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별 영향 범위와 평가방법은 사업계획, 지역특성, 입지특성,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함

<표 2-4>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구 분	평가항목	현황조사	평가방법	평가범위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본 계획과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 과의 부합여부 검토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비교, 입지비교 등 대안을 환경적 측면 포함 다각적 측면에서 비교·분석		-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 의 보 전	생물다양성·서 식지 보전	○식물상·동물상 현황 ○특이 종분포 및 서식현황 ○생태자연도 등 현황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조사지점 및 횡수 : 노선경계 1km, 2회	○식생훼손, 식생보전등급, 현존량, 순생산량의 변화 및 동물 서식환경 변화요인 예 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반경 1km이내)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형상, 지질상황 등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터널공사 등 토공사에 의 한 지형변화, 터널 안정성, 생태축 단절 등 예측 및 저 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주변 경관자원 분포현황 ○경관훼손지역 현황 ○조사방법 : 현지조사를 통한 주요 조 망점 조사	○계획노선 주변 경관자원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수환경의 보전	○주변수계 수질현황 ○조사방법 : 문헌(측정망) 및 현지조사 ○조사지점 및 횡수 - 지표수 : 8지점 2회 - 지하수 : 4지점 2회	○공사시 토사유출, 오·폐수 발생, 운영시 오수, 비점오 염물질 발생으로 주변수계 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저 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표 2-4> 계속

구 분	평가항목		현황조사	평가방법	평가범위	
입지의 타당성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 기준의 부합성	기상	○기상청 자료분석 ○조사방법 : 문헌조사	○최근10년간 기상관측자료 분석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대기질	○대기질 현황, 주변오염원 ○조사방법 : 문헌(측정망) 및 현지조사 ○조사지점 및 횟수 - 8지점, 2회	○공사시 장비가동, 운영시 터널환기 등에 의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반경 500m이내)
			온실 가스	○온실가스 배출현황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토양	○토양오염도 현황 ○조사방법 : 문헌(측정망) 및 현지조사 ○조사지점 및 횟수 - 4지점, 2회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양오염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소음·진동	○소음·진동 현황, 정온시설 ○조사방법 : 문헌 및 현지조사 ○조사지점 및 횟수 - 8지점, 2회	○공사시 장비가동 및 발파, 운영시 열차 운행 등에 의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반경 200m이내)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 현황 ○조사방법 : 문헌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환경기초 시설 현황 및 적정성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 경적 자원 순환 ○폐기물 발생 현황 ○조사방법 : 문헌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사회·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용도, 지목별 토지이용, 주변 개발계획 현황 ○조사방법 : 문헌조사	○주변 개발여건, 교통망 등과 연계된 노선, 정류장, 차량 기지 계획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인구·주거	○인구·주거 현황 ○조사방법 : 문헌조사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 및 주거변화 검토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2.3 대안의 설정

가.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본 계획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을 위한 개발기본계획으로 대안의 종류 선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등의 규정에 따라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개발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함

<표 2-5>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종 류	선정 방법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나. 대안의 종류 선정

- 본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의 종류별 선정은 상기 선정방법을 토대로 '계획 비교' 와 '입지' 에 대하여 비교·검토함
- 선정된 대안 중 계획 비교는 계획시행에 대한 기본적인 선정안으로 계획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며, 입지는 선형과 계획노선 내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시설용지별 규모 및 배치 등을 비교·검토함
- 또한 입지는 노선 및 차량기지 위치에 대한 입지를 주변여건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비교·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선정함

<표 2-6> 대안의 종류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	선정사유 및 제외사유
계획 비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개발기본계획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을 건설하기 위한 기본계획임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통해 수도권 교통혼잡 해결 및 장거리 통행자에 고속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효율 교통수단을 도입하고자 함
수단·방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제2차(2011~2020)" 및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에 포함된 사업으로 타당성 확보
수요·공급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제2차(2011~2020)" 및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에 포함된 사업으로 타당성 확보
입 지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현황, 주변조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노선안과 차량기지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토지 이용계획 수립
시기·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제2차(2011~2020)" 및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 에 포함된 사업으로 타당성 확보됨 ○ 2018.1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36으로 경제성 확보됨
기 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대안을 추가 선정하여 검토할 계획임

다. 대안의 비교·검토

(1) 계획비교

- 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계획은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 및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6~2025)”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수도권 교통혼잡 해결 및 장거리 통행자에 고속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철도중심의 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고효율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임
- 이에 따라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시와 미수립시에 대한 대안 비교·검토를 수행할 계획임

(2) 입지대안

- 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서울을 거쳐 경기도 수원시 까지 총 연장 74.2km에 정거장 10개소(양주, 의정부, 창동, 광운대, 청량리, 삼성, 양재, 과천, 금정, 수원) 및 차량기지 1개소(양주시)를 계획하였으며, 계획대상지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고 계획 시행에 따른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주변입지여건 및 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대안별 비교·검토를 실시할 계획임

(가) 노선 대안별 비교·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단계에서 지형현황, 주변 입지여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민원발생,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선대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하고 최적의 노선을 선정할 계획임

(나) 차량기지 입지 대안별 비교·검토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작성단계에서 수송수요, 차량편성, 부지면적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차량기지가 건설되도록 할 계획임

제3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3.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 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공개함
-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견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계획임

3.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의견 수렴

가. 초안 공고 및 공람

- 본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국토교통부는 초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일간신문과 해당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하는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내용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 아래사항을 수록할 계획임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공람의 내용, 초안 요약문과 초안 등은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구 또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정보통신망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게시하고, 공람장소(국토교통부, 경기도, 양주시, 의정부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수원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에는 평가서 초안과 함께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을 비치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도록 하며, 공람기간은 법적 준수기간인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은 공람기간에서 제외)를 준수할 계획임

<표 3-1> 공고장소 및 내용

구 분	게시 내용
지자체 정보통신망 또는 국토교통부 정보통신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및 공람의 내용 - 개발기본계획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나. 설명회 개최 및 공청회 개최

-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초안 공람기간 중 주민들의 이동여건을 고려한 장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설명회 일시 및 장소는 계획노선 대상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임
- 설명회 개최 공고는 초안 공람 공고시 포함하여 공고하고, 설명회 개최 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계획임

<표 3-2> 공청회 개최조건

구 분	공청회 개최 조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제4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제8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함
- 주관행정기관 : 국토교통부
- 심의기간 : 2020년 4월 1일 ~ 4월 17일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협의회 위원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10인

<표 4-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구성

연번	구분	소속	성명	비고
1	위원장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장 0 0	-
2	승인기관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박 0 0	-
3	협의기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정 0 0	-
4	민간전문가	한세대학교 대학원	주 0 0	위원장 위촉
5	민간전문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 0 0	협의기관 추천
6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이 0 0	지자체 추천
7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환경정책과	홍 0 0	지자체 추천
8	지방환경관서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0 0	지방환경관서 추천
9	주민대표	수원시정연구원	김 0 0	위원장 위촉
10	시민단체	생태보전시민모임	민 0 0	위원장 위촉

4.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별 심의의견

정 0 0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 총괄 의견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동 협의회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 등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부합성 여부에 대해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분석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기질, 소음·진동, 지형·지질 등 환경상의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는 사업노선 및 주변의 정온시설 분포현황, 지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
- 사업노선 주변에 공사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 실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본 사업노선 대부분이 지하로 통과할 계획인 바, 도심 지역의 지하 통과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미치는 환경영향(지형·지질, 소음·진동, 지하수 등) 등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기관)의 자문을 받아 지하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함
 - 아울러, 지하 통과에 따른 환경영향(지형·지질, 소음·진동, 지하수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실시계획 등 수립

3. 대안

- 자연생태·대기·수환경·생활환경 등 환경성과 효율적인 철도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안 노선을 설정하고
 - 대안별(3개 이상)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 선정하여야 함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조사는 철새 및 야생생물의 이동 특성(번식기, 개화기 등)을 고려한 계절 조사를 실시

- 대기질 현지조사는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 원칙
- 사업지역 주변 주거지역, 학교 등 정온시설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영향 예측을 빠짐없이 실시
- 터널공사시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철도설계지침 등에 따라 적정 환기계획 수립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본 사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으로 양주시 등 14개 지자체를 통과(21~25쪽)하고 있는 바, 해당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할구역에 공람장소 설치 등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
- 환경영향 저감대책 등에 대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평가서 초안 요약서를 작성하여 평가서 초안과 함께 비치하고,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의견수렴 실시

2020. 4. .

심의위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정

주 00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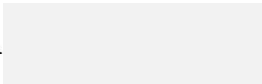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 안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설정
2. 토지이용 구상안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적합한 ‘토지이용구상안’ 으로 사료됨
3. 대 안
 - 적정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수환경보전항목”에서 본계획이 통과하는 구간에 서울시 소재 4개소, 경기도 소재 11개소의 정수장이 위치하고 있는바,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시 뚝도 정수장은 약 0.6km, 안양 비산정수장은 약 0.4km의 근접거리에 위치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여
 - 공사시 토사유출및 오폐수 발생과 운영시 오수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등으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큼으로 철저한 오염방지대책이 필요함
5. 기 타

2020. 4. 10 .

심의위원 주 

선 00 위원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의견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기 타

○ 환기구 설치지역 주변의 주거시설 등을 대상으로 철도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대기질 및 소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

○ 계획노선 주변의 타 교통시설 등을 고려한 소음진동 누적평가를 통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

- 계획노선의 지하통과구간을 대상으로 상부 정온시설 및 지하 시설물에 대한 진동영향(발파, 철도운영 등) 검토(누적평가 포함)

○ 계획노선의 지하통과구간을 대상으로 공사 시 및 운영 시 지하수 유출에 따른 환경적 영향(지하수위 저하, 지반침하 등)의 면밀한 검토

○ 차량기지 설치계획을 대상으로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환경적 영향(대기질 및 소음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대안 검토

2020. 4. 6.

심의위원 선

이 0 0 위원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노선이 통과하는 경기도 7개시와 서울시 7개구로 한정하여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개별사업에 대한 국지적인 평가에 한정하게 되어 환경영향평가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어려움.

- 계획노선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B 노선과도 청량리, 삼성역 등에서 교차하게 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이 시차를 두고 시행됨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환경용량이 고려된 적정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대상지역의 설정은 광역적, 누적 영향이 고려되어야 함.

2. 대안

- 계획노선으로 인한 환경불평등의 발생, 지역주민의 이주, 인구감소, 급격한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적 영향이 충분히 고려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함.

- 수도권내 균형발전, 지역간 연계 협력, 지역산업발전 등 국가발전 전략 패러다임 변화 등

- 개발에서 관리의 시대로의 변화를 반영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등 최상위 계획의 환경보전 및 국토환경공간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과정 및 공사기간 대상지 주변의 교통과 사회환경 등 여건변화에 따른 정주환경 영향과 도시환경 전반에 대한 영향 추가 검토 필요.

4. 기 타

- 지역주민 참여 및 정보제공 서비스 제고

2020. 4. 13 .

심의위원 이 

흥 00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

□ 총괄 의견

- 본 심의의견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사업'의 계획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작성에 있어서 환경적 가이드라인을 담아 체계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계획 수립에 목적이 있음. 또한 철도 특성상 공사 및 운영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경기도의 7개 市를 종단하는 사업으로 생태축 단절을 최소화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소음·진동 환경기준 부합성 평가대상지역 설정시 기존 지상역 활용 정거장 외 광역급행전용 지하 정거장 차량기지의 경우 공사 발파시 주변에 미치는 진동을 고려해 반경을 확대 설정하여야 함
2. 토지이용 구상안
 - 추가 신설구간의 산림훼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수립 필요
3. 대안
 - 신설구간에 대해서 다수의 노선 대안을 선정하고 자연·생활환경 등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종 노선 선정의 적합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동·식물상) 동·식물상에 대한 현장조사는 분류군별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조사시 범종보호종 뿐만 아니라 경기도 보호종에 대한 검토도 병행하여야 함
 - (소음·진동) 계획노선 인근의 정은시설에 대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5. 기 타
 - 주민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 문헌자료 활용시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동 심의의견은 전략환경평가서 작성시 반영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020. 4. .

심의위원 흥

김 0 0 위원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통보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 총괄 의견

- 본 계획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일원 ~ 수원시 일원을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을 중점 검토하여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최대한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영향권 범위설정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주변 개발사업 현황을 조사하고, 누적 영향평가 실시

2. 토지이용 구상안

- 기존 도로 및 철도와의 연계축을 고려한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검토하고 환경적 악영향이 우려되는 구간은 위치와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3. 대 안

- 계획의 목적, 주변 토지이용상황, 입지여건 및 환경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 선정사유와 최종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획노선 인근 정온시설(주거지, 학교 등) 등을 고려하여 대기, 소음·진동 등의 영향이 최소화되는 노선을 선정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시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모든 조사는 항목별 특성과 계절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조사자의 인적사항 및 근거자료를 반드시 수록·제시
-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

- (동·식물상) 법정보호종 등 동·식물 조사는 생육·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생물의 서식 및 이동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사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대기질, 온실가스) 공사 및 운영 시 대기질 영향예측과 저감방안 강구,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등을 산정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지하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환기소 등)의 주변지역은 현황 조사지점으로 선정
- (수질, 지하수) 지하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 영향, 터널폐수, 토사유출, 오수,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 (소음·진동) 공사 및 운영 시 동·식물, 주변정온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발파시행지역 주변 정온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지하공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현황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발파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주민들이 공람 및 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동 사업에 따른 환경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

6. 기 타

- 문헌자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과 관련성이 있는 최근 자료를 활용하고, 문헌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시 상기 제시된 심의의견의 반영여부를 제시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0. 4. .

심의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김 0 0 위원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대상지역 범위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신설노선 중 지하구간의 경우 지질 검토에 따른 범위 설정 필요

2. 토지이용 구상안

- 지자체의 토지이용이 아닌 노선대(평가범위 포함)의 토지이용 검토 필요
-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검토 필요

3. 대안

- 주요 거점(정거장)을 연결하는 노선에 대한 대안을 설정 후 입지 타당성 검토 필요
- 현재 No action과의 비교는 있으나 노선대에 대한 대안 설정 후 대안별 환경영향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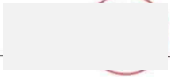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신설구간에 대한 지질 검토 필요(싱크홀 등에 대한 문제, 지하 구간 추가 굴착시 영향 검토 필요)
- 기존 시가지 관통하는 철도노선의 경우 공사·운영 시 추가적인 영향 검토 필요
- 교통량 예측결과를 토대로 한 신규/기존 노선별 환경부하량(수질오염부하량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저감방안 마련 필요
- 지하 신규노선에 대한 환기구 설치 지역에 대한 검토 필요

5. 기 타

-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기존노선인 경부선 활용 시 교통부하량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2020. 4. 9.

심의위원 김 

민 00 위원

평가준비서 심의의견

안전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적정함.

2. 토지이용 구상안

-의견 없음.

3. 대안

-의견 없음.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지하수계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검토 바람.

5. 기 타

-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서울시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 서초구는 자치구별로 설치된 '협치회의'라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추진하였음을 좋겠음.

2020. 4. 12.

심의위원 민 